

대학직장통합방위협의회규정

통합방위법(제6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) (2021.06.04)

제정 : 2006.06.01

개정 : 2008.12.17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설치 목적) ① 이 규정은 「통합방위법」(법률 제10339호 2010.06.04)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한 대원대학교 직장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직장협의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2. 17, 2011. 11. 22, 2021. 03. 01., 2021.12.01>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>

- ① 총장, 각 처장, 예비군지휘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>
- ② 위원은 각 부설기관장 및 각 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원)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>

- ②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- ③ 간사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한다.

제4조(임원의 임무) ① 위원장은 본 협의회를 통할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회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사업)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

- 1. 직장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03. 01.>
- 2. 직장예비군의 운영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 03. 01.>
 - 가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 - 나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- 다.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 - 라.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양양, 민·관·군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

3.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고 의결된 사업 및 안건 <개정 2021. 03. 01.>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예산부담에 따르는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개정 2021.12.01>

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④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⑥ 사업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차기 회의에서 인준을 얻을 수 있다.

⑦ 회의 진행은 국민의례 - 개회(위원장) - 상황보고(작전상황:간사) - 안건·회의주제 제시-주제별 토의 및 의결 - 맺는말(위원장)-폐회 순으로 한다. 회의 시 사회는 간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12.01>

제7조(회의록) ① 본 협의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12.01>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 5-1-30(대학직장예비군방위협의회규정)은 폐지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